

토론

-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소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토론 1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

공사현장 만인사망율을 보는 시각 차이?



(스위스 인터라켄)

(한국 서울)



(영국 런던)

(한국 서울)

국가	만인사망율	한국/해당국	국민소득(\$)
스위스	0.05	33.20	82,950(2.65)
영국	0.16	10.38	42,558(1.36)
한국	1.66	1.00	31,345(1.00)

- 1) 대한토목학회(2019), 건설현장 사고 저감을 위한 제언(Issue Paper, No. 19)
- 2) WEF(2020),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1020
- 3) Frank Frickmann 외 6명(2012), 782 consecutive construction work accidents: who is at risk?

토론 2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소장

토론 3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문제점

- 형사특별법 성격이 강함 →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예방규정은 매우 적음
- 기본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 안전보건조치의무에 대한 예방지도감독의 근거(강제성) 없음 →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의 처벌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 의무주체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제4조),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5조)로 설정 → 별개의 장소에서의 신축·증축공사의 발주자는 의무주체에서 제외
- 의무주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원청인지, 하청인지 불명확 → 안전보건조치의무(예방의무)의 실효성 부족 초래
- 대기업의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 → 전체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업체 적용 제외 또는 유예(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대부분의 사업장 내 유지보수공사, 설치·해체공사 등(이론적·경험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사)조차 별다른 이유 없이 시행 유예됨
- 다른 안전보건관계법(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중복·충돌 → 의무주체의 착종 → 의무이행력 및 규범력 약화 초래
- 의무주체가 주로 장소적 관점에서 설정 → 사고발생원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위험을 관리하는 자는 의무주체에서 제외 → 안전보건조치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곤란 → 무죄 속출 예상

- 중형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의무내용이 불명확 → 기업은 안전역량 향상보다는 형사처벌 회피에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건 대부분 소송 제기할 가능성 유력 → 사회적 자원의 낭비 초래
- 절차서 작성, 점검 위주의 의무 부과 → 문서작성 중심의 형식적 안전대책 조장. 문서작성능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무죄 속출 예상(처벌이 중소기업체에 집중될 가능성)
- 실질적 안전역량보다는 안전부서 중심의 조직·인력 확대 → 중소건설업체 안전인력 엑소더스 현상
- 법 전체적으로 위헌 소지가 많음 → 위헌소송 제기될 가능성 농후
-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개념(범위)의 잘못된 설정으로 CSO로 하향화 조장

토론 5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 6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7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토론회 주요 논의 주제와 방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어 약 2.5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입니다. 시행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과 민간 모두 준비부족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 제정이후 발생한 재해로부터 법적 용 상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제정 후 1년의 시간동안 지원의무를 갖는 관련정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가 준비한 가이드라인이 기대만큼 상세하지 못하여, 현업의 실무자들이 적용하기에 부족하고 직접적인 지원도 부족하여 각 기업과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준이 모호한 부분입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투입기준 부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기준부재 등입니다.

둘째, 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처벌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CEO이외에 안전총괄관리자(CSO)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지사장 역할을 할 CSO를 임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을 도입의 취지보다는 처

별에 대한 회피방법만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몇 로펌들은 잘못된 컨설팅을 통해 충동질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설계, 제작,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재해의 발생 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함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식별과 관리에 대하여 상당수 기업과 기관이 외주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도 부족하고 전문가의 전문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유해위험평가의 대부분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련 컨설팅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주에 의존하는 현상은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과 기관 스스로 관리능력을 보유해야함, 공무원의 능력향상 등 현실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한 설계, 제작, 설치의 결함발견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발견이 쉽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인 관리행위의 수행여부에 치우쳐 결함이 검토될 염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안전관리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고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서 재발방지와 안전강화에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고조사 및 데이터 활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

넷째, 지난해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붕괴사고는 산업현장이 원인이 되어 시민이 사망한 재해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도로, 시내버스가 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중복하여 처벌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하여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가 다수의 시민사상자가 발생하는 재해만을 다룬다면 1명 이상 사망으로 중

대시민재해를 규정한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

그러면, 과연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당장의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법”이라는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개선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이며, 재난과 안전을 모두 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안전보다는 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관리 체계가 주요한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및 생활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여러 부처와도 관계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